

공고내용

페이지 : 1/1

개재(요청)일자	2020-03-25	담당부서	교통과 백미영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297호
신문공고 개재 언론기관			
제목	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2018년 허가자)		
내용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에 따라 2020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18년도에 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가. 신청기간 : 2020. 03. 25 ~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p> <p>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74)</p> <p>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p> <p>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p> <p>붙임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문 1부. 끝.</p>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한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 2017.08.31)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1대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25일
대덕구



1. 허가신청대상자

당해 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018년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신청 기간 : 2020. 03. 25~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3.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 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 나.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다.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 내 양도·양수한 자
- 라. “운송사업”허가를 대여한 자
- 마. 화물운송증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바. 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사. 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시행일 : 2019. 07. 01.]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자의 구비서류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별지1호 서식)
- ②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별지2호서식)
- ③ 화물운송증사자격증 사본
- ④ 표준운송약관 사용 동의서 (별지3호 서식)
- ⑤ 차고지 설치확인서 : 1톤 이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 ⑥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관할관청이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직접 확인(이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 ⑦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 ⑧ 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4호 서식), 또는 기본증명서 1부.

7. 제출처 : 허가신청 기관 [대덕구 교통과]

* 대덕구 교통과(☎ 042-608-5274, FAX 042-608-3845)

첨부 : 별지서식 4부. 끝.

4.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 범위 및 차량충당조건
가. 최대 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 포함)

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5. 양도·양수 제한
허가 유효기간 내에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별지 1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앞쪽)			

신청인	전화번호
주소	
사업에 사용할 회물자동차의 대수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특별시|자·관여시|자·• 특별자치시|자·도자시|• 특별자치|도자|사· 구하·

부록 1. 특수설계자체점검
서울시민사무국
서울시민사무국
서울시민사무국

제작인
크리에이티브 오스케어 네비게이션

성명	외출시승사업 예비허가증	
주소	생년월일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습니다.		

五
七
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한국학술원 출판부
한국학술원

택배용 외물파동자 운송사업자 확인서

화물의 집회·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월 1일

회사명 : (인, 서명)
신청자 : (인, 서명)

※ 주1)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설치한 주사무소의 주소를 의미하며 별도의 주사무소를

주2)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소(대리점) 주소 기재
(예: 00시 00구 00동 00번 00영업소(대리점))

주3) 학자 등기발아 유행 중인 실재 차량의 등록번호 기재 (00번0000)

210mm×297mm[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수[운송/주선/가맹]

표준운송약관 사용동의서

□ 사업의 종류 : 운송[용달/개별/일반화물] / 주선[일반/이사화물]

□ 사업자(신청인)

○ 상호명 :

○ 대표자 :
(연락처 :)

○ 법인번호(생년월일) :

상기 본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은 화물협회의 표준운송약관을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 표준약관 사용에 동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약관신고를 하여야 함.

(표준운송 약관은 각 협회에서 제공)

신고업체(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충주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신고 및 인허가 신청 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 범인 등기사항증명서		
2.	결격사유무증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법인등록 여권 운전면허) 번호 : 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